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신고서
[]휴업·폐업 []합병 외의 사유에 따른 해산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2일
신고인	상호(명칭)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 휴업예정기간 또는 폐업·해산 예정일: 년 월 일

○ 휴업·폐업 또는 해산사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휴업(폐업·합병 외의 사유에 따른 해산)을 신고합니다.

이
연
도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을 폐업하려는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폐지에 관한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법인이 합병 외의 사유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해산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	---	--------

유 의 사 항

1. 휴업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때에는 미리 신고하여야 합니다.
2. 법인이 합병 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에는 그 청산인이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처리 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신고수리 → 통보

신고인

처리기관: 국토교통부(물류터미널사업 담당부서)